

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##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부경위

본 규약안은 2010년 4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(지역발전위원회, 2009. 9. 16)에 의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·운영하기로 결정함.
  - 이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을 개정(2010. 1. 1 공포·시행)하여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(이하 “발전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도록 함.
  - 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,
  - 발전기금의 관리·운영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, 시·도의

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
- 16개 시·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(안)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

- 조합의 명칭은 「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」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라 함 (안 제2조).
- 조합은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(이하 “조합원”이라 한다)를 구성원으로 함 (안 제3조).
-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도록 함 (안 제4조).
- 조합은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·운영,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,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,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,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 (안 제5조).

#### 나.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

- 조합에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, 위원은 조합원(시·도)의 기획업무 담당실장(기획관리실장),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국장,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함 (안 제6조).

-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중에서 각 1명씩 선출, 임기는 1년으로 함 (안 제7조).
-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,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, 중요재산 취득·처분,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·의결 및 결산의 승인,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함 (안 제8조).

#### 다.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

-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임기 3년(연임가능)의 조합장을 두며,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함 (안 제13조).
-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(안 제14조).

#### 라. 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
-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, 용자관리계정은 「지방세법」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, 운용하지 아니함\* (안 제16조, 부칙 제2조).

\* 이는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임

-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,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며,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,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 (안 제17조).
-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

작성하여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함 (안 제18조).

- 재정지원계정은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,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용 함 (안 제19조).
- 용자관리계정은 법 제17조의2제1호에 따른 예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,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 함 (안 제21조).

#### 마. 기타

- 조합장은 법 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,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5조).
-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6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○ 본 규약안은

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과의 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(2009. 9. 16)에 따라 '지역상생발전기금' 을 신설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을 개정(2010.1.1)하여 16개 시·도가 기금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'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(안)'을 제정, 도

##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

### ○ 규약(안)의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합구성에 관한 사항으로, 조합은 16개 시·도를 구성원으로 하며,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·운용, 지방채 인수,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으로, 조합에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, 위원은 시·도 기획업무 담당실장(16), 행정안전부 재정담당국장, 지방재정전문가(2)로 구성하고, 조합규약의 제·개정, 주요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,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·의결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으로, 조합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였으며(임기 3년, 1회 연임),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15조부터 24조까지는 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으로, 발전기금은 서울, 인천,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세입의 35% 출연금(10년간) 등으로 조성하며,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보조사업 지원 하는 재정지원계정과 지역 SOC 조성사업 등에 융자하는 융자관리계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음.
- 그 밖에 조합장은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### ○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

발전을 가져오며,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수평적 자원 조정사례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, 지역 SOC사업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동 규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붙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